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88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서왕진·김준형·강경숙
차규근·김선민·신장식
박은정·정춘생·김재원
황운하·백선희·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에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해당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 시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개선계획 미비 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정책 대응 강화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탄소예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2조제3호 탄소중립 정의에 따라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고,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

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표로 함. 이 때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감축목표에 포함하여 감축 개선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선계획이 미흡할 시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탄소예산 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재”를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며 현재”로 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 우리나라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잔여 총량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생존”을 “생존과 환경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국가비전에 따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

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다음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1. 2030년까지 40퍼센트 이상 감축
2. 2035년까지 65퍼센트 이상 감축
3. 2040년까지 85퍼센트 이상 감축
4. 2045년까지 95퍼센트 이상 감축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 점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여야 한다.

10. 탄소예산

제9조제2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장은 당해년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연도별감축목표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개선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심의하여 개선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탄소예산의 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재설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u>현재</u>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u>--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며 현재--</u>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저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 8. (생략)

<신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

이후 우리나라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잔여 총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

1. -----생존과 환경권-----

-----.

2. ~ 8. (현행과 같음)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국가 비전에 따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신 설>

⑥ (생략)

배출량 대비 다음 각 호에서--

1. 2030년까지 40퍼센트 이상

감축

2. 2035년까지 65퍼센트 이상

감축

3. 2040년까지 85퍼센트 이상

감축

4. 2045년까지 95퍼센트 이상

감축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 점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

1. ~ 9. (현행과 같음)

10. 탄소예산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순배출량-----

-----.

③ -----
-----순배출량-----

-----장은 당해
년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년도 연도별감축목표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개선계획-----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심의하여 개선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④ · ⑤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14. (생략)	<u>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 다.</u>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탄소예산의 산출 기준 등 에 관한 사항</u> 3. ~ 14. (현행과 같음)
---	---